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1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장 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확정일자 부여절차 및 정보제공 등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이 「주택임대차 보호법」 제3조의6 규정에 근거하여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및 「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」으로 시행되어, 실효성이 없어진 「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」을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」을 폐지함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

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(참조 : 동정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동정부과,
전화 : 02-3396-4564, 팩스 : 02-3396-8612, email : kno219@junggu.seoul.kr)에게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
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
규칙 폐지 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